

연구과제 계약서

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부산광역시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와 안광섭(이하 "계약상대자"라 한다) 은/는 상호 신뢰와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이행키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 하기로 한다.

- 다 음 -

제1조 (연구과제명) 본 계약의 대상 연구 과제명은 「6 시그마 총오차범위를 이용한 임상분석연구」라 한다.

제2조(연구 기간) 연구기간은 협회의 학문성의 검증 및 연구결과 검증 등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2년 02월까지로 하며, 계약상대자는 협회가 정하는 임상병리검사학 학문 분류체계, 연구의 탐구영역 및 연구 주제 분석, 임상병리검사학 고유의 정체성 확립,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 분류 및 국가과학기술분야 분류에 임상병리검사학의 등재를 위한 학문 분류안 도출, 임상병리검사학의 사회적 승인을 위한 기반을 연구하고, 협회로 제출한다.

제3조(연구원) 본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씨젠의료재단 안광섭으로 하며, 공동연구자는 효성 시티병원 황미향으로 한다.

제4조 (비밀의 보장) ①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지득한 일체의 정보를본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의 해지 및 만료 시에 제 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.

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협회로부터 제공받았거나 협회에 대해 알게 된 모든 정보 및 자료를 본 연구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또는 협회가 요청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협회로부터 얻은 사본을 포함한 일체의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한다.

④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해당 연구원이 자신의 의무와 동등한 비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보증하며, 당해 연구원이 그 의무를 위반하여 협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5조(연구비 지급) 협회는 계약상대자에게 다음과 같이 연구비를 지급한다.

가. 총 연구비 : 오백만원 (₩ 5,000,000)

나. 연구비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법인통장으로 개설하여 사용한다.

다. 계약종료 이후 계약상대자는 협회에 연구비 사용내역을 계약 종료 1개월 이내 증빙서류를 정산하여 보고 한다.

제6조 (신의성실 및 상호협조)

① 연구개발에 대한 일정은 협회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, 계약상대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협회는 연구결과를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육, 기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구비 총액을 초과하거나 연구비로 책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.

제7조 (연구결과의 귀속 및 권리양도의 제한)

①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연구 결과물, know-how, 발명, 발견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일체의 연구결과는 협회의 소유로 한다.

②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국내외 지적재산권을 협회의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지적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협회가 부담한다.

제8조 (결과 보고) "계약상대자"는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모든 연구 결과를 "협회"에게 서면 및 전산파일형태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 (계약의 해지) ①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, 그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② 협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가. 계약상대자가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
나. 연구결과가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

다. 계약상대자가 제8조 소정의 보고서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연구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한 경우

③ 위 제2항에 따른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연구비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연구비의 반환) 협회가 제9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연구비 전액을 협회에 반환하여야 하며, 협회가 제9조 제2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해지일까지 실제로 사용한 연구비를 기준으로 상호정산하기로 한다.

제11조 (해석) 본 계약서의 내용이나 이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해석 또는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12조 (계약의 효력) 본 계약은 협회와 계약상대자는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.

제13조 (양도금지) 계약상대자는 협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, 권리·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, 위임, 위탁, 하도급, 담보제공 또는 기타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.

제14조 (분쟁해결)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협회와 계약상대자는 일차적으로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양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가급적 협회에서 정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1 년 7 월 8 일

“협회”

주 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67

기관명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
부산광역시회

대표자 황 원 주 (인)

“계약상대자”

주 소 부산시 영도구 대교로 14번길 17,
미광마린타워 103동 1205호

연구책임자 안 광 섭 (인)